

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

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「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접수기간(2024. 1. 15. ~ 2. 16.)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홈페이지(www.sokcho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- 사업대상 : 「주택법」 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
- 사업내용 :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·보수 비용 일부 지원
- 사 업 비 : 353,500천원(시설보수비 283,500천원, 보안등 전기요금 70,000천원)

□ 지원대상

- 대상단지 : 총 156개 단지 / 31,557세대
 - － 준공된 지 **10년 이상**인 단지 : **시설보수비, 보안등 전기요금 모두 지원**
 - － 준공된 지 **10년 미만**인 단지 : **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한함**
- * 「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는 지원 제외
- *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년도(2023년) 전기요금의 90% 지원

□ 지원기준

규 모(세대수)	지원비율(%)	지원상한액
50세대 미만	사업비의 90%이하	1천5백만원
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	사업비의 70%이하	2천만원
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	사업비의 60%이하	2천5백만원
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	사업비의 50%이하	3천만원
500세대 이상	사업비의 50%이하	4천만원

- * 「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4조 제2항 및 동 조례 별표 1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%까지 우선 지원
- * 사업비 : 지원금액 + 자부담금액

□ **지원항목 ※ 예년과 동일**

-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
-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
- 경로당 유지보수
- 단지 내 보 · 차도(주차장 포함) 등의 유지보수
-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 · 하수도(저수조 포함) 유지보수 및 준설
-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
-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
-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· 관리 점검비용
- 주민운동시설 유지 · 보수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
-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〈 **지원 제외대상** 〉

-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의 유사 사업
-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
-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의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

〈 **페널티 부여** 〉

- 지난해 지원대상 단지로 결정되었으나, 사업을 포기한 단지에 대하여 페널티 부여
 - 사 유 :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액 발생 및 지원 수혜 단지 감소 초래
 - 페널티 : 포기단지(4곳)에 대하여 금년도 대상단지 선정 時 후순위 배정

□ 지원대상 선정방법

-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, 속초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
 -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 - 최근 5년간 2회 이하 지원받은 단지(지원금을 적게 받은 단지 순)
 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지(지원금을 적게 받은 단지 순)

□ 신청방법

- 신청인
 -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 :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
 -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 :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
 -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 : 입주자가 연명·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의 명의로 신청
- 제출처 :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(종합민원실 2층)
- 신청시 제출서류
 - 1) 시설보수비
 -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 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(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)
 -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
 -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, 사진 등 관련 서류
 - 2) 보안등 전기요금
 -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
 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단지 :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
 -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 : 단지 내 보안등 배치도

□ 유의사항

- 총공사비 기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기 바람
- 공사에정금액(부가세 포함) 1,500만원 이상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

-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차년도로 이월 불가능함에 따라, 사업(공사)은 11월 말 까지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야 함
- 보조금 수령 통장은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전용 통장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기타 지원 기준은 「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
-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게 운영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,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

□ 사업절차

사업절차	내 용	비 고
사업공고 (1.5.) ↓	• 속초시청 홈페이지, 행정게시판, 속초시 공보 공고문 게시	안내문발송
사업 신청 (1.15.~2.16.) ↓	• 사업신청서 제출	건축과 제출
심의 · 결정 (2월~3월) ↓	• 현지조사 : 2.19.~2.28. •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: 3월중 • 보조단지 선정 및 교부결정 통보 : 3월중	개별 통보 (교부결정서 송부)
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신청 (3월~11월) ↓	• 공동주택별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추진 (사업자선정 → 공사 → 준공) • 공사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	건축과 교부신청서 제출
사업 정산 (12월)	• 정산서 제출(사업완료 30일 이내)	건축과 제출

- 관련 서식은 ‘속초시청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건축/건설 > 주택 > 공동주택 정보마당 > 90번 게시물’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관련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(☎ 033-639-28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